

#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

2004. 11. 5.  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 
시민행정위원회

## 1. 審査經過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4년 10월 7일 · 종로구청장 원안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4년 10월 7일 원안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145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 
제1차 시민행정위원회(2004. 11. 5) 상정 · 의결

## 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생활복지국장 박 종 인)

### 가. 제안이유

-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 시 주민들이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고하던 불편을 해소하고자 종로구 인터넷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구 홈페이지 및 인터넷납부 시스템 활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### 나. 주요골자

- 대형생활폐기물 신고 시 “동장에게 신고”를 “구 홈페이지 활용”을 추가.
- 대형생활폐기물수수료 부과·징수 시 “구 수입증지(인증기사용) 징수”에서 “구 홈페이지 내의 전자지불시스템”을 추가 (안 제29조제2항)

## 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박 성 열) —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## 4. 質疑 및 答辯 要旨 (생 략)

## 5. 討 論 要 旨 (없 음)

## 6. 修 正 案 의 要 旨 (없 음)

## 7. 審 査 結 果 : 원안가결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)